

군산시 공고 제2023-1684호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군 산 시 장**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1. 폐지 이유**

「군산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의해 부여·관리됨에 따라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

3. 입법 예고 기간 : 2023. 8. 16. ~ 2023. 9. 5. [20일간]**4. 의견제출**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나 개인은 2023년 9월 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
장(참조 :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2) 전화 : (063)454-3983
- (3) 팩스 : (063)452-6929 (수신 여부 확인 필요)
- (4) 전자우편 : wnsqja44@korea.kr (수신 여부 확인 필요)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계(063-454-39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폐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998.10.01 조례 제3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내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서 군산시민의 가로사용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가로) 가로명을 부여하는 가로는 간선가로 및 이와 연결되는 주된 가로로 한다.

제3조(가로명 선정과 고시) 가로명은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이를 따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 설치) ① 가로명이 정하여진 가로의 구간에는 가로명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 설치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가로명 사용) ① 가로명이 정하여진 가로는 가로명을 사용한다.

② 차량의 행선표지, 노선표지, 기타 행정상 필요한 때에도 이 가로명을 사용한다.

③ 가로명은 별표와 같다.<개정 98.10.01>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1.13 조례제 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12. 16 조례제 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01 조례제 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3-1703호

「군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를 상위법인 「도로법」에 맞게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상위법(도로법) 개정에 따라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원인자에 대한 시행명령의 기준 조항 변경

- 도로법 제31조 → 제35조

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 변경

- 도로법 제64조 → 제91조

다.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항 변경

- 도로법 제40조 → 제61조

3. 입법 예고 기간 : 2023. 8. 16. ~ 2023. 9. 5. [20일간]

4. 의견제출

군산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건설과
- (2) 전화 : (063)454-3570
- (3) 팩스 : (063)452-8172(수신 여부 확인 필요)
- (4) 전자우편 : lgykkedm@korea.kr (수신 여부 확인 필요)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관리계(063-454-35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일부개정 도로법 제31조 → 제35조 도로법 제64조 → 제91조 도로법 제40조 → 제61조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를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로,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군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접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도구역 이라 함은 도로구역종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 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 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유료주차장 및 개인별 주차장, 부설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 징수) ①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징수)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의 접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군산시도로접용료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8조(사고발생시 책임부담)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의 책임은 횡단차도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9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1.13 조례제 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3-1704호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항 개정사항 반영
- 사실조사 의뢰 · 기관 · 협약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
- 오탈자 정비 및 띠어쓰기 등 한글맞춤법 규정 준수하여 정비
- 전반적 정비를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2. 주요내용

- 조례 입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7조제3항” ⇒ “제7조제4항”으로 상위법 근거 조항 수정 반영
- 사실조사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수탁기관” ⇒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용어 변경 통일
 - 오탈자 및 띠어쓰기 맞춤법 규정 준수 정비

○ 사실조사 의뢰 및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사실조사 의뢰 요건 및 기관 선정 요건 명확화

○ 사실조사 업무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 관련 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관한 전반적인 조항 신설
- 협약 내용, 협약 기관 의무사항, 지도·감독, 해지 사유 등 구체적 명시

3. 입법예고 기간 : 2023. 8. 16. ~ 2023. 9. 5.(20일간)

4.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지역경제활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주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7층 지역경제활력과(유통혁신계)
- (2) 전화 : ☎ 063-454-2694, FAX) 063-454-6013

※ 팩스 제출 시 수신확인 필수

- (3) 전자우편 : hoyong28@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활력과 유통혁신계

(063-454-26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 및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는 담배업무와 관련된 경험과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관련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개인정보보호 효력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지연 및 불공정한 처리
 2.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 행위
-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 · 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계 법령 및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4. 관련 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부득

이한 경우

5. 무리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과정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사실

과 부합되지 않게 조사하여 분쟁을 야기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공고 제2023-17호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2. 폐지 이유

- 이 조례는 군산시 시민문화회관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1995.1.13.)되었으나, 군산예술의 전당 개관으로 그 기능이 이전되어
-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시민문화회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는 현재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함.

4. 입법 예고 기간 : 2023. 8. 16. ~ 2023. 9. 6. [21일간]

5. 의견제출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예술의전당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 54102 군산시 백토로 203, 군산예술의전당관리과
- (2) 전화 : (063)454-5536
- (3) 팩스 : (063)462-9309 (수신 여부 확인 필요)
- (4) 전자우편 : smjkhb@korea.kr (수신 여부 확인 필요)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관리과 공연기획계(063-454-55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현행 조례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일부개정) 2002.12.31 조례 제560호

관리책임부서 : 시설운영계

연락처 : 063) 454-5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시민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의 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공연장 시설과 전시실 및 기타 설비에 한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96.12.16>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16, 2000.01.10>

1.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사용기간

2. 사용목적 및 사유

3. 기타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16>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01.10>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회관의 설치 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96.12.16>

1.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공익상 필요할 때

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96.12.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96.12.16>

제6조(사용료)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허가할 때 이를 징수한다.

제7조(관람료) ① 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2.16>

③ <삭제 2002.12.31>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도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3.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4.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시민위안 무료공연

② 문화예술단체의 회원전이나 회원의 작품발표회 또는 학교장 및 총학장의 추천에 의한 재학생의 문화예술행사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환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회관 사정으로 사용이 중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의 회관사용 5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0조(원상복구) ① 회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등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및 설비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제한) 시장은 공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도 있다.<신설 2000.01.10>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01.10>

부칙(1995.01.13. 조례제 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2.16. 조례제 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1.10. 조례제 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31 조례제 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문화관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사용기준	요액	비고
공연장	가. 1일 (08:00~ 23:00)		1. 평일: 월요일~금요일 휴일: 토요일 오후: 일요일~공휴일
	평일	160,000	
	휴일	200,000	
	나. 오전 (08:00 ~ 12:00)		2.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평일	80,000	시는 해당 요금의 50%로 함
	휴일	120,000	
	다. 오후 (13:00~18:00)		3. 초과사용 기간
	평일	100,000	30분미만: 당해 사용료의
	휴일	120,000	20% 30분이상 1시간미만: 당해 사용료의 20%
	라. 야간 (19:00~23:00)		
	평일	120,000	
	휴일	150,000	
전시실	3.3m ² (1일)	400	대전시실, 중전시실 포함

2. 냉·난방 사용료

(단위: 원)

시설명	기준	요액	비고
냉·난방	1회	사용시간과 연료시가에 의함	

3. 부대시설 사용료

품 명	기 준	요 액	비 고
악기			
그랜드 피아노	1회	20,000	
얼 라이트	1회	6,000	
음향			
마이크	1회	10,000	
무선마이크	1회	6,000	
녹음기	1회	4,000	
녹음료	1회	3,000	
조명			
종합조명	1회	30,000	
스파트라이트	1회	7,000	
포로젝타	1회	5,000	
영사기			
영사기	1식 1회	30,000	
환등기	1식 1회	10,000	
기타			
행사용의자 연대	1식	5,000	
현수막 개첨료	1건	5,000	
영화 촬영	1건	20,000	
라디오 중계료	1회	5,000	
T.V 중계 (녹화료)	1회	20,000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공고 제2023-18호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1. 규 칙 명**

-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2. 폐지 이유

- 이 규칙은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1995.1.19.)되었으나, 상위조례 폐지에 따라 규칙 또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4. 입법 예고 기간 : 2023. 8. 16. ~ 2023. 9. 6 [21일간]**5. 의견제출**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예술의전당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 54102 군산시 백토로 203, 군산예술의전당관리과
- (2) 전화 : (063)454-5536
- (3) 팩스 : (063)462-9309 (수신 여부 확인 필요)
- (4) 전자우편 : smjkhb@korea.kr (수신 여부 확인 필요)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관리과 공연기획계(063-454-55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징수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현행 시행규칙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일부개정) 1997.10.21 규칙 제156호

관리책임부서 : 시설운영계

연락처 : 063) 454-5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시민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사용료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설비) 조례 제2조의 기타 설비 라 함은 회관내 기존시설외에 특별히 시설하는 것으로서 회관의 사용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조명, 음향, 무대의 특수한 장치와 전시장 등에 시설물을 증설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 ① 회관의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장 허가 여부를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전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0.21>

② 회관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문화회관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사용료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동시에 발부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회관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문화회관 사용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시행이전에 문화회관관리과장의 협의를 얻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97.10.21>

제5조(관람권 관리) ① 관람권의 판매 및 수표관리는 시에서 전담한다. 다만, 관람권을 예매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판매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관람권(예매권, 초대권, 회원권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부칙(1995.01.19. 조례제 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21. 조례제 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7.10.21>

시민문화회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 분 (일 시간) 20 년 월 일 시 분		
사용코자 하는 시설			
사용목적			
사용할 특별한 시설을 요하는 개요			
행사주요내용			
입장예상인원	참석범위		
입장료징수여부	유 대인 소인	원 무 원	사용료 면제여부
사용료	원	기타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행사 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 명 (인)

군산시장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97.10.21>

시민문화회관시설사용허가서

허가사항

사용자 주소 성명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 부터 (일 시간) 20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료계		기본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허가조건

1.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및 규칙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관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문화회관 시설 및 집기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97.10.21>

사용료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직업 :

2. 사용코자 하는 시설명 :

3. 사용 목적 :

4. 사용 기간 :

5. 감면의 종류 :

6. 사용 목적 :

위와 같이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납 부 서

제 호	년도	시일반회계
관		
항		
목		

금
(W)
단

상기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금고 귀하

납 부 자	
적 요	

제 호	년도	시일반회계
관		
항		
목		

금
(W)
단

상기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금고 귀하

제 호	년도	시일반회계
관		
항		
목		

금
(W)
단

상기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금고 귀하

납 부 자	
적 요	

군산시 고시 제2023-125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11.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9건, 폐지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3. 8.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 소고시일	이동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리 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길 30-1	20230808		20090508	섬이름 사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6-7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번영로 922-2	20230809		20090710	군산에서 전주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기존도로명 활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32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79	20230808		20090508	섬이름에 방위 사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533-9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송안1길 25-6 (나운동)	20230807		20100125	행정동명으로 서수식, 방향성으 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3길 31-1		20230731	건물 폐지	2009050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62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3 길 31-1	20230731		2009050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517-3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교길 91	20230728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534-7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송1길 18 (나운동)	20230802		20100125	수송택지 개발지역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899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군의로 1131	20230802		20090710	군산시와 익산시 지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552-7, 563-2, 565-4, 565-10	전라북도 군산시 경촌안1길 19-7 (경암동)	20230731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방향성 도로명 부여	

군산시 고시 제2023-128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86-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86-9번지 외 1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나. 명 칭 : 개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청사(개정면사무소) 재건축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부지면적 : 3,943m²
 - 나. 건축규모 : 건축면적 734,07m², 연면적 1,141.20m²
4. 사업시행자
 - 가. 주 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 나. 성 명 : 군산시장(농업축산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5.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불임참조
7. 관계도서 : 계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1. 편입토지조서 총괄표

구 분	합 계			공유지(군산시)	
	필지 수	면 적(m ²)	구 성 비	필지 수	면 적(m ²)
합 계	13	3,943	100.00%	13	3,943
답	3	1,323	33.55%	3	1,323
대 지	8	2,517	63.84%	8	2,517
전	2	103	2.61%	2	103
· 소유자별 구성비 : 공유지(군산시) 100.00%					

2. 편입토지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m ²)		소 유 자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합 계				3,943	3,943			
1	개정	발산	85-2	대	440	440	군산시	
2	개정	발산	85-4	답	205	205	군산시	
3	개정	발산	86-9	대	1,743	1,743	군산시	
4	개정	발산	86-24	답	1,052	1,052	군산시	
5	개정	발산	87-5	대	46	46	군산시	
6	개정	발산	131-1	대	138	138	군산시	
7	개정	발산	131-9	답	66	66	군산시	
8	개정	발산	618-30	대	113	113	군산시	
9	개정	발산	618-31	전	45	45	군산시	
10	개정	발산	618-32	대	4	4	군산시	
11	개정	발산	618-33	전	58	58	군산시	
12	개정	발산	618-34	대	17	17	군산시	
13	개정	발산	618-41	대	16	16	군산시	

군산시 고시 제2023 - 13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3차)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지곡동 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명 칭 : 교보자산신탁(주)

나. 대 표 자 : 조혁종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 B동 7, 8층 (서초동)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2년 7월 8일

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일 : 2023년 8월 8일

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332-1번지 외 34필지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분양)

다. 대지면적 : 15,403m²

라. 건축면적 : 6,452.2482m² (건폐율 : 41.89%)

마. 연 면 적 : 55,626.0076m² (용적률 : 249.98%)

바. 건축규모 :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4개동 외, 291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비고
계		291				
84A	민영주택	162	84.5746	31.0130	115.5876	
110A	민영주택	24	110.7887	38.4297	149.2184	
110T	민영주택	105	110.7887	38.4297	149.2184	

아.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업비 : 122,508,000(천원)

차.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5년 11월 15일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군산시 고시 제2023-73호(2023. 5. 2.)와 동일

7.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3)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3-1696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대로2-6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열람을 공고하오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개별통지가 불가한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2023. 8. 16.

군 산 시 장



다 음

□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시행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명	사업의 규모	시행위치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대로2-6호선 도로개설공사	- L=440m, B=30m	군산시 조촌동 209-37 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6. 26. ~ 2025. 12. 30.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군산시장, 군산시 시청로 17
- 토지조서 내용 :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도시계획과에 토지조서 등 비치
-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가액 산정 후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진행 → 보상금 지급

7. 보상금 산정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 토지소유자 :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달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봄.)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추천감정평가 업체명 :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m ²)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 소	성 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3. 8. 16. ~ 2023. 8. 30. [14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454-3526)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대로2-6)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예정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1	군산시 조촌동	210-9	도로	25	15	전주시 금암동 147	송 * 례				지분 6/325
						군산시 조촌동 325	송 * 석				지분 36/325
						금산시 금동 63	송 * 석				지분 24/325
						군산시 조촌동 207	송 * 석				지분 24/325
						양주군 동두천 읍생연리 821	송 * 녀				지분 6/325
						군산시 금동 63	이 * 화				지분 100/325
						이리시 주현동 230	이 * 현				지분 25/325
						군산시 금동 5	송 * 례				지분 25/325
2		209-35	전	1,029	1,029		국(기획재정부)				
3		209-41	임	2,514	2,514	군산시 조촌동 85	효창**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51	주식회사 **은행	근저당	
4		209-3	전	317	317		국(기획재정부)				
5		209-11	전	215	215		국(기획재정부)				
6		209-38	전	100	100		국(기획재정부)				지분 93/238
						군산시 금광동 172	한 * 동				지분 145/238
7		198-10	전	282	282		국(기획재정부)				
8		198-9	전	50	50		국(기획재정부)				지분 99/268
						군산시 나운동 155-7	강 * 원				지분 169/268
9		198-8	전	50	50		국(기획재정부)				
10		199-4	전	496	496	군산시 동지곡길 53	김 * 녀				
11		199-1	전	324	324	군산시 풍전3길 29	유한회사 **개발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021	전북**** 전주지점		
12		198-12	임	1,389	1,389	옥구군 대야면 죽산리 518-10	조 * 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727	정 * 택	근저당	지분 992.05 /9,674
						옥구군 성산면 성덕리 131	원 * 명	군산시 금암동 73-91	장 * 기	근저당	지분 495.87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예정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9,674
13	군산시 조촌동	199-5	임	518	518	군산시 조촌동 202	안 * 근				
14		201-2	전	6	6	군산시 풍전3길 29	유한회사 **개발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021	전북**** 전주지점		
15		200-1	전	459	459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8	김 * 연				
16		201-1	전	11	1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34	이 * 훈				지분 1/2
						군산시 나운동 1517	오 * 일				지분 1/2
17		209-39	전	1	1	군산시 풍전3길 29	유한회사 **개발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021	전북**** 전주지점		
18		209-12	전	76	76		국(기획재정부)				
19		209-34	전	175	175		국(재무부)				
20		209-40	전	58	58	군산시 풍전3길 29	유한회사 **개발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021	전북**** 전주지점		
21		209-33	전	4	4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04-2	신 * 옥				지분 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76	송 * 자				지분 1/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55-17	이 * 영				지분 1/4
22		209-32	전	16	16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04-2	신 * 옥				지분 409.5/ 1,016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598-91	이 * 구				지분 409.5/ 1,016
						군산시 조촌동 209	김 * 대				지분 197 /1,016
23		209-31	전	6	6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04-2	신 * 옥				지분 409.5 /1,016
						군산시 법원로 48-5	김 * 선				지분 197 /1,01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76	송 * 자				지분 204.75 /1,01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55-17	이 * 영				지분 204.75 /1,016
24	군산시 사정동	산57-1	임	8,231	1,868		국(산림청)				
25		산56-1	임	31,116	2,163		국(산림청)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예정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26	군산시 사정동	산50-2	임	198	125	천안시 백석동 910	고 * 환				지분 1/2
						부천시 오정구 내동 364-1	고 * 환				지분 1/2
27	군산시 사정동	산58-1	임	5,355	691	전주시 덕진동 1331	고 * 육				지분 1/4
						군산시 개정동 533	고 * 석				지분 1/4
						군산시 사정동 503	고 * 식				지분 1/4
합계		27필지		53,021	12,958						

○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대로2-6)

일련 번호	물건의 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읍면동	지번			EA	m	m ²	주소	성명	
1	군산시 조촌동	209-35	건물	10.7 x 7.8			75.7			국 (기록자정류)
			담장	H3.5 x 11.0			38.5			
			콘크리트 포장	B1.2 x L10.0			12			
			비닐 하우스	B5.4 x L6.0			32.4			
			필각정자	B6.2 x L7.2			22			
			가건물	B2.0×L3.5			7.5			
			가건물	B2.4×L4.7			14			
			간판1	B2.0×H0.8	1					
			간판2	B1.2×H0.7	1					
			간판3	B1.2×H0.9	1					
			수목	H=0.5~15.0	377					
2	군산시 조촌동	209-36	건물	2.8×2.4			6.7	군산시 풍전6길 16	이 * 우	
			창고	2.6×0.8			2.08			
			담장	H2.0×12.0			24.0			
			수목	H=1.0~1.5	19					
4	209-34	수목	H=12	1						국 (기록자정류)
5	209-3	수목	H=2.0~5.0	17						국 (기록자정류)
6	209-41	수목	H=2.0~5.0	24				군산시 조촌로 85	효창** 주식회사	
		묘지	봉분	1						
7	200-1	수목	H=1.5~10.0	36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8	김 * 현	
8	199-5	수목	H=10.0~15.0	3				군산시 조촌동 202	안 * 근	
		묘지	봉분	1						
9	198-12	묘지	봉분	1				군산시 서흥남동 801-11	백 * 선	

이의신청서

① 사업명			
② 사업장 위치	전북 군산시		
③ 사업자	군산시장		
④ 이의신청 제출자	관련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⑤ 이의신청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열람에 따른 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공고 제2023-1697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중로2-33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열람을 공고하오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개별통지가 불가한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2023. 8. 16.

군 산 시 장



다 음

□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시행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명	사업의 규모	시행위치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중로2-33호선 도로개설공사	- L=354m, B=15m	군산시 소룡동 722-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6. 26. ~ 2025. 12. 30.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군산시장, 군산시 시청로 17
- 토지조서 내용 :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도시계획과에 토지조서 등 비치
-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가액 산정 후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진행 → 보상금 지급

7. 보상금 산정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 토지소유자 :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달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봄.)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추천감정평가 업체명 :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m ²)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 소	성 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열람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2023. 8. 16. ~ 2023. 8. 30. [14일간]

2.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454-3526)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중로2-33)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예정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1	군산시 소룡동	722-2	도로	18	18	전주시 칠성로 187	김 * 훈	군산시 조촌동 774	군산**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지분 1/2
2						전주시 칠성로 187	김 * 희			근저당 지상권	지분 1/2
3		1003-3	구	120	120		(국)농수산부				
4		743-6	답	236	236	군산시 소룡동 737	유한회사 ***산업개발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22	임실**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5		743-7	답	285	285	군산시 소룡동 737	유한회사 ***산업개발	김제시 백구면 번영로 2572	백구**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6		743-5	답	100	100	군산시 소룡동 1347-12	유 * 례				
7		743-8	답	198	198	군산시 문화동 26	이 * 호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식회사 **은행	근저당 지상권	
8		743-9	답	8	8	군산시 문화동 26	이 * 호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식회사 **은행	근저당 지상권	
9		1003-4	구	100	100		(국)농수산부				
10		764-6	답	10	10	군산시 중동 274	유 * 렐				
11		764-7	답	217	217	정읍시 시기1길 22	유 * 호				
12		764-5	답	239	239	군산시 수송동로 20	유 * 렐				
13		764-8	답	257	257	정읍시 수성택지2길 17	유 * 호				
14		723-4	답	598	598	옥구군 개정면 아동리 257	김 * 철				
15		744-18	답	1,196	1,196	군산시 풍문2길 35	김 * 분	군산시 종양로 2가 141-12	군산**** 협동조합	근저당	
16		744-21	답	14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8길 24	채 * 석				지분 1/3
17						군산시 미원동 119	고 * 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압류	지분 2/3
합계		17필지		5,235	5,235	군산시 나운동 100-14	**** 주식회사	정읍시 칠보면 칠보중앙로 90	칠보**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중로2-33)

일련 번호	물건의 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읍면동	지번			EA	m	그루	주소	성명	
1	군산시 소룡동	723-3	철제대문	H=2.5m, L=6.0m	1			옥구군 개정면 아동리 257	김 * 철	
			조립식담	H=3.0m, L=71.0m	1					
2	군산시 소룡동	722-1	수목	H=0.8m~5.0m			60	군산시 칠성로 187	김 * 훈	
								군산시 칠성로 187	김 * 희	

이의신청서

① 사업명			
② 사업장 위치	전북 군산시		
③ 사업자	군산시장		
④ 이의신청 제출자	관련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⑤ 이의신청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열람에 따른 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